

전문가 간담회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대응

본 자료는 2017년 4월 6일 보험연구원에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대응」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CONTENTS

전문가 간담회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대응

I. 논의배경 5

II.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및 토론 6

1.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안) 6
2. 개인연금법 제정(안) 11
3. 연금세제 수준 및 공사연계연금 도입 14
4.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및 금융교육 강화 17

I. 논의배경

-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¹⁾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고 인구고령화 속도²⁾도 가장 빠른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음
- 현재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³⁾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은 상태임
-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계획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그동안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와 대응 전략을 모색함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안)
 - 개인연금법 제정(안)
 - 연금세제 수준 및 공사연계연금 도입
 -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및 금융교육 강화

1)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49.6%임(OECD 통계)

2)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인 고령사회에서 14%를 넘는 고령사회로의 진입기간이 일본은 24년, 미국은 73년, 프랑스는 115년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17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3) 예상 실질납부기간은 30년 미만이고 실질소득대체율도 대부분 30% 이하로 예상됨(보험연구원(2016. 7. 18), 이슈 분석, KiRi Weekly)

II.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및 토론

1.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안)

가. 내용

-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그동안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지배구조의 취약성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현재 계약형 퇴직연금에서는 근로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음
 - 현행 제도에서 근로자의 의견은 제도선정 단계의 노사합의에 의해 반영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또한, 자산관리와 운용관리를 동일한 사업자가 맡고 있어 운용기관의 자산관리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사후적 평가 기준이 없어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와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의 도입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2016년 8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⁴⁾
 - 2017년 3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의 도입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는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⁵⁾

- 기금형 퇴직연금은 회사와 독립된 신탁 형태로 퇴직연금 기금을 설립하고, 회사와 독립된 수탁자에 의해서 운용되도록 정해진 제도임

- 전문가에 의한 기금운용을 통해 운용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기금을

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6. 8. 31)

5) 매일경제(2017. 4. 2)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수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근로자가 연기금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므로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음
- 하지만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단점도 있음

표 II-1 퇴직연금 지배구조별 차이

구분	계약형	기금형
연금관리형태	금융회사에 일괄위탁	독립적인 퇴직연금 기금 설치
관리 및 운영주체	금융회사 (운영기관, 관리기관)	기금운용의 외부위탁
연금의 주요결정	계약 (경영자 주도)	연기금위원회 (노사동수)
노동자 참여	DC는 근로자 직접투자	노조가 있는 경우 적극 참여
운용감독	금융기관이 대상	개별연금기금감독

자료: 보험연구원(2013),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나. 토론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 근로자와 사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대리인 문제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수탁법인을 비영리재단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택권 확대와 배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활용에도 제약적임

- 호주의 경우 4대 기본 기금형(기업형, 산업형, 공공형, 소매형) 중 소매형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데, 이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결과라 여겨짐. 중소기업으로의 퇴직연금 확산이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형을 비영리재단으로 제한하면 호주와 같은 기회를 스스로 배척하는 길일 수 있음

- 연합형 기금 수탁법인⁶⁾의 지배구조를 적립금의 규모 및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면 지배적인 사업장 이외 사업장의 근로자

6) 산업·지역별로 다수 기업이 연합해 기금을 설립하는 형태

수급권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개별 기업단위 기금형의 운영성과 등을 검증한 이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연합형 기금의 특징을 감안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아직은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이 금융업권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외부전문가가 퇴직연금 운용에 관여한다 하여도 사용자와 노조의 영향력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금형 제도는 사용자, 수탁자, 운용회사 등 수탁자의 신인의무를 명확히 하는 연금제도로써, 계약형과 지배구조 경쟁, 가입자 선택권, 자산배분 합리화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바, 도입 정당성에는 이견이 없음
- 기금형 자체가 수익률 제고를 담보하지는 않으나, 연금자산 운용 과정에서 신인의무 명확화, 가입자 최선이익원칙에 의거한 자산배분, 디폴트옵션을 통한 동태적 자산배분 등으로 수익률 제고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 기금형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열 간, 업종 간, 지역 간 연합형 퇴직연금이 바람직하며, 가입자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one governance multi-fund 또는 one governance one fund 등 다양한 형태로 퇴직연금기금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음
- 수탁법인의 영리법인 허용(이윤추구)은 신인의무와 충돌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하며, 중소기업 대상 연합형 수탁법인 설립에 대한 진입 정책(공공독점, 시장자유)은 호주모델, 영국NEST모델 등을 근로복지와 경쟁 정책 등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천승환」 (생명보험협회 실장)

-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은 공감하나 국내 퇴직급여제도의 문제점은 계약형의 문제가 아닌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함
- 기금형의 경우 수탁법인이 자산운용 및 수익률에 책임을 져 기업의 수수료 절감 유인이 크게 작용하므로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의 역할 축소 및 수익성 악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수탁법인을 영리기관으로 허용할 경우 현재 계약형 구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으며 은행이 퇴직연금사업의 전반을 차지할 우려가 높음
- 10년간 누적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 > 채권투자 > 주식투자 순이므로 기금형 도입을 통한 수익률 제고는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음
- 미가입 기업을 독려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보하고 퇴직금의 연금수급을 의무화하여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부터 논의되어야 함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수탁법인문제인데 이를 관리·감독할 장치부터 마련되어야 함
 - 노사합의하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임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기금형 제도 도입으로 계약형을 없애자는 논리가 아니므로 대상 사업장의 선택지를 넓혀 준다는 의미에서 도입 자체의 정당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형 도입 후 단기적으로 가입 실적이 많지 않아 실효성 논란에 휩싸일 경우 정책적으로 기금형에 대한 무리한 활성화 정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음

■ 기금형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임

- 호주의 경우 가입자가 1,400만 명에 이르고 적립금도 1,70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는 점과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평균 9.5%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할 경우 제도 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선행적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최장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근로자의 자산운용 참여와 수급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제도 운영과 관리가 복잡하여 추가비용만 소요될 수도 있음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자산운용 전문기관에 운용을 위탁할 수요가 많으므로 증권사의 역할은 늘어나지만 보험사와 은행의 역할은 줄어들 수 있음

■ 기금형 퇴직연금의 자산이 전문가에 의해 운용된다면 수익률이 향상될 수 있겠지만, 관련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수익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별기금의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보완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각 제도에 대한 업권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제도 간 경쟁을 통한 제도의 발전, 수익성 제고 노력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은퇴자산에 대한 위험기피 성향이 강하므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한 수익률 제고가 이루어진다고는 단정 짓기 어려움

2. 개인연금법 제정(안)

가. 내용

- 개인연금법 제정의 목적은 개인연금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연금 상품과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함임
 - 개인연금 적립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면 이전 상품에 대한 관리는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가입자들도 노후대비를 위해 필요한 상품을 선택하기보다 세제혜택이나 설계사의 권유 등에 따라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함
- 개인연금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인연금상품의 범위확대, 개인연금계좌 도입, 연금사업자의 등록·업무·의무, 연금가입자 보호, 그리고 연금 관련 인프라 구축임
 - 개인연금상품으로 보험, 신탁, 펀드 외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⁷⁾을 추가하도록 함
 -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하여 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연금계좌에는 세제적격 연금상품, 비적격 연금보험,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가 모두 포함되도록 함
 -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연금사업자로 등록하고 연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해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연금자산의 압류가 일정부분 제한되도록 함
 - 국민의 노후대비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노후대비를 위해 필요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체계적인 협조체계가 마련되도록 함

7)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 주는 상품임

표 II-2 개인연금법을 통한 제도개선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선
규율체계	세법, 개별 금융업법을 통해 상품별 관리(보험, 신탁, 펀드)	연금상품 특성을 반영한 통일적 규율체계
연금자산 관리	금융회사의 연금자산 관리기능 미흡	개인연금계좌를 통한 종합적 연금자산 관리
연금상품	보험, 신탁, 펀드만 판매 (연금에 특화된 상품 부족)	금융회사의 전문적 관리기능이 포함된 상품 도입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체계가 상품판매 위주로 규율	판매의 운용, 연금지급 등 연금특성에 맞는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보완
공시체계	개별 상품별 공시로 공시체계 일관성 부족	공시 표준화, 채널 일원화 등을 통해 선택권 강화

자료: 금융위원회(2016. 5. 31),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나. 토론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 개인연금계좌의 경우 1인1계좌가 아니라 1사1계좌라는 점에서 연금자산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입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임
- 연금에 특화된 금융회사의 전문적 관리기능을 담보하는 투자일임 연금상품의 경우 수수료율을 높임으로써 연금자산 관리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음
- 세제적격과 비적격 연금상품의 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상호이전을 가능하게 할 경우 일종의 세제혜택 차익을 노린 모럴헤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개인연금 가상계좌는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가입자당 가상계좌가 아닌 회사당 가상계좌라는 점에서 정책의 한계가 있음
- 계좌이전과 관련하여 법안은 계좌 내 연금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의 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이전의 방식과 내용은 시행령과 규정 등에서 구체화할 문제임

- 세제적격과 비적격 간 이전 허용 논란은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순편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음

「천승환」 (생명보험협회 실장)

- 비적격 연금보험과 개인연금계좌가 통합되어 계좌이전이 허용된다면, 세제상 혼란을 줄 수 있음
 - 생보사만 취급하는 비적격 연금보험은 모든 금융기관이 판매하고 있는 적격 연금저축과 태생적으로 상이한 상품이기 때문임
-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계좌통합관리보다는 수익률 제고, 세제혜택 강화, 상품 선택권 다양화 및 종신연금 수급을 장려하는 것이 더 타당해보임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의 개인연금법 도입에 대한 근본적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상당함
 - 제도는 만들어지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대부분 다른 법령 인용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
 - 따라서 개인연금의 유형별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품 간 연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최장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되면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되나 연금자산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려면 정보 제공과 함께 연금자산관리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함
- 연금상품에 대한 최소요건인 5년 기간을 확대하고 세금혜택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세제적격 개인연금과 비적격 개인연금 간에 상호이전이 가능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구분하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을 것임

- 보험 수리적 입장에서라도 구조가 다른 상품을 통합하게 되면 보험의 수지상등원칙이 깨질 수 있음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다양한 업권과 상품에 분산되어 있는 연금자산을 하나의 틀에서 관리한다는 아이디어는 바람직하나 개인연금법의 내용이 연금자산 운용에 치우친 느낌이 있어 노후소득 기능에 역효과가 우려됨
- 노후소득관점에서 종신연금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업권의 역할이 중요하나 선취 수수료 등의 문제로 자산운용 관점에서만 평가된다면 타 업권에 비해 열등하다고 인식될 수 있음
- 세제적격 개인연금과 비적격 개인연금은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법체계에서 다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3. 연금세제 수준 및 공사연계연금 도입

가. 내용

-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아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가입확대가 필요함
- 2013년 세제개편으로 연금세제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고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납부액 한도도 연 400만 원에서 700만 원(IRP 포함)으로 증가하였음
 -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세제혜택 확대가, 고소득층에게는 세제혜택 축소가 이루어짐

-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15%의 세액공제율이, 5,500만 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됨

나. 토론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 사적연금 세제의 적정수준을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수준과 견주어 따져보는 것이 타당함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적연금 대체율은 OECD 평균수준이나 사적연금 축적 정도는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세제와 보조금 등 재정의 역할이 선진국 대비 절실한 상황임
 - 개인연금의 확장성(가입률 제고)과 충분성(기여율 제고)을 기준으로 세제와 보조금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공적연금(독일, 스웨덴), 개인-퇴직연금(미국, 영국) 등 공사연금연계제도의 검토가 필요함

「천승환」 (생명보험협회 실장)

- 노인빈곤율이 높고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은 상황에서 충실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연금세제를 확대해야 함
 - 미국 401K의 소득공제한도와 비교해 볼 때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부액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최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적격), 비과세 혜택 축소(연금, 저축성 보험)와 같은 세제혜택의 변화는 노후소득보장 관점에서 다소 역행하는 측면이 있음

■ 향후 연금세제 개편 시 단순한 납부액기준이 아닌 소득재분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연간납부액 700만 원(연금저축 및 IRP 포함)까지 세액공제를 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한적임
- 따라서 중산층 이하의 노후소득 개선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Catch-up Plan, 독일 리스터연금 등을 고려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이 고려된 연금세제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최장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세제적격 연금 상품에 대한 과세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저소득층 가입자의 가입률이 오히려 감소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세제개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스러움

- 저소득계층의 경우 세제혜택보다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국민연금액의 부족분을 보충하고 사적연금도 활성화할 수 있는 리스터연금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납입시점은 59세인데 비해 수급시점이 65세로 미루어지고 있어 이 기간을 메울 수 있는 plan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현행 세제혜택 수준의 적정성은 3층형 노후보장 체계의 보장 수준을 고려하여 면밀히 분석될 필요가 있음

- 세제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며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률을 감소시킨 세액공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는 노후소득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 하지만 세제혜택의 대상이 노후소득에 취약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 위주인 점 등을 감안하여 세제혜택의 한도를 부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저소득층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임

4.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및 금융교육 강화

가. 내용

- 정부는 개인의 연금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개설하였고,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강화와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나. 토론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후준비교육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의 품질 강화 노력이 필요해 보임

「손흥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금융교육 강화 정책은 당연히 필요해 보이며, 영국과 같이 연금에 대해 무료 맞춤형 자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천승환」 (생명보험협회 실장)

- 연금포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공시시스템의 경우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
- 청소년의 금융역량 강화, 특히 연금상품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금융교육 과정의 신설이 필요함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가입자 편의성 제고, 금융교육 강화 정책 등과 관련하여서는 단기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함
 - 특히 금융이해력을 표방한 금융교육은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등에서도 소개하여 조기교육을 통해 체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최장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통합연금포털은 정보제공만 가능하고 가정변경에 의한 다양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통합비교공시 강화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시 업데이트 등 관리가 중요할 것임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국민의 노후소득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금지급 측면의 효용성을 보다 강조하여 국민들이 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은퇴자산의 적립측면만을 강조하지 말고 현재와 같은 저축수준으로 향후 어느 정도의 은퇴자산 확보가 가능한지 알 수 있어야 할 것임
 - 적립단계와 지급단계 모두에 대한 균형 있는 금융교육 및 정보공시 강화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전문가 간담회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대응

발행일 | 2017년 5월

발행인 | 한기정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소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